

2003. 11. .

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

계룡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(농 업 기 술 센 타 소 관)

전문위원 김 세 현

계룡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안

□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정비와 원활한 부품공급을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운영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